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415

제안연월일: 2023년 3월 10일 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"다중운집 행사"정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제정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정의된 "다중운집 행사"정의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"다중운집 행사"에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(별표 1, 비고 3 신설).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'다중운집 행사'에는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.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· 현 행	가정안 조군 내미표	수 정 안
1. 0	/ 1 8 년	1 8 2
[별표 1]	[별표 1]	[별표 1]
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	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	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
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	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	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
범위(제2조 관련)	범위(제2조 관련)	범위(제2조 관련)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비고 1: (생 략)	비고 1: (현행과 같음)	비고 1: (현행과 같음)
비고 <u>2 :</u> 위 표의 가목 '지역	<u>2:</u>	(개정안과 같음)
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		
관한 사무'중 '지역 내 주민'은		
'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		
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		
사람'으로 본다.		
<u><신 설></u>	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'다	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'다
	중운집행사'란 순간 최대	중운집 행사'에는 주최ㆍ
	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	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
	예측되는 행사를 말하며,	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
	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	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
	시 여부 등은 주최자・주	<u>포함한다.</u>
	관자가 있는지 여부, 자체	
	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	
	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,	
	<u>행사 참가자의 수, 행사</u> 사기 자신이 트서 미 이처	
	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	
	<u> </u>	
	<u> </u>	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비고 1: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.
- 비고 2: 위 표의 가목 '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'중 '지역 내 주민'은 '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'으로 본다.
- 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'다중운집 행사'에는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	
[별표 1]	[별표 1]	
생활인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(제2조 관련)	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(제2조 관련)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
비고 1: (생 략)	비고 1: (현행과 같음)	
비고 2: 위 표의 가목 '지역 내 주민의 생활	비고 2: 위 표의 가목 '지역 내 주민의 생활	
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'중 '지역 내 주민'은	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'중 '지역 내 주민'은	
'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	'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	
하는 모든 사람'으로 본다.	하는 모든 사람'으로 본다.	
<u><신 설></u>	비고 3: 위 표의 다목 중 '다중운집 행사'에는	
	<u>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</u>	
	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	
	포함한다.	
	부 칙	
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